



영리병원, 의회 “전면 폐지” vs 道 “내국인 제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방향 놓고 양 기관 이견 道 “내국인 진료 못하는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의회 “영리병원 특례 전부 삭제 통해 공공성 확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영리병원 존폐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영리병원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반면,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유지하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쪽으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하는 등 양 기관의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도 보건복지여성국은 “복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로 발생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지난 10일 추진단에 제출했다.

앞서 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복지국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한 복지국이 정해진 시한 내에 개원하지 않자 도는 이듬해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복지국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앞으로 제주특별법 제307조를 개정해 도시사의 허락을 받아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명확히 제한할 계획이다. 이런 식의

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제주에서 운영되는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은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어, 굳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지 않아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제주도의 판단이다.

반면 도의회는 영리병원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의회 차원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과정을 검토해 온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제주도의회 TF’(이하 TF)는 지난 13일 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 병원 개설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307조~312조를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TF는 “지난 2018년 10월 도민을 대상으로 한 속의형 공론조사에서 복지국제병원 개설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영리병원은 국가 건강보험 의료체계를 해치는 구조로 규

정을 삭제하고, 감염병 예방 등 공공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양 기관 별로 의견이 갈리자 도는 오는 7월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영리병원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국가로부터 받은 특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이 실리적이고 본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 개정 방향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는 제주도가 반대해도 영리병원 폐지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상훈 TF단장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 해도 그동안 불거진 국내 의료인의 영리법인 우회투자, 공공의료 훼손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영리병원 특례 전부 삭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문연로에서

제주 농업 고령화, 농기계 지원 강화해야

최근 통계청에서 2020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발표됐다.

발표된 자료를 살펴보면, 우선 전국적으로 5년 전과 비교해서 농가와 농가인구의 감소, 고령화와 소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제주지역도 마찬가지이다. 2015년 3만3487가구, 9만3404명에서 지난해 3만5199가구, 8만141명으로 감소했다. 연령별 상황은 15세 미만은 8.8%인데 반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28.9%로 육지보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문제를 피하지는 못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일손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업의 특성상 당면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행히 우리 제주에서는 지난



강연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평균이 2400만원으로 제주 농업인들이 1.5배 높은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가소득이 농가부채를 뒷받침 해주고 있지만 농가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도서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경영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농기계 구입 지원과 구입이 어려운 농기계에 대해서는 임대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농가인구 감소·고령화 따라 농촌 일손부족 갈수록 심화 농업 기계화로 변화 대응을

2018년 농업인 고령화 대응과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과 협력해 농기계·농작업 편의 장비를 지원한다는 발표를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수정돼 매년 지원되는 사업규모가 축소됐다. 비록 지원기간이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늘어났지만 사업량이 줄어들면서 신청량에 비해 지원되는 농기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

한 행정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동가위는 735농가가 신청했지만 선정된 농가는 250농가에 불과하고, 운반차도 518농가가 신청했지만 160농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수요가 많은 파쇄기의 경우 321농가 중 114농가만 지원이 되면서 농업인들의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원래 제주지역의 농업경영비는 육지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통계청 자료에 2019년 기준 가구당 3600만원이 소요되는 것

하지만 농기계 임대사업도 응이치는 않은 상황이다. 농업의 특성상 품목별로 농작업 시기가 일정할 수밖에 없고, 동일기간에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농기계 임대 분소의 경우 운영 1년 만에 해당지역 분소보다 지원되는 사업규모가 축소됐다.

비록 지원기간이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늘어났지만 사업량이 줄어들면서 신청량에 비해 지원되는 농기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

한 행정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동가위는 735농가가 신청했지만 선정된 농가는 250농가에 불과하고, 운반차도 518농가가 신청했지만 160농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수요가 많은 파쇄기의 경우 321농가 중 114농가만 지원이 되면서 농업인들의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원래 제주지역의 농업경영비는 육지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통계청 자료에 2019년 기준 가구당 3600만원이 소요되는 것

도내 건축허가 면적 감소 코로나19·경기 침체 여파

올해 4월 제주지역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감소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기준 도내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58만8863㎡) 대비 10% 줄어든 52만9838㎡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용 허가 면적이 15만1044㎡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문화교육시설·사회용(-13.7%) ▷기타(-9.2%) ▷상업용(-7.1%) ▷공공용(-3.3%) 순으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공업용(326.6%), 농수산업(3.2%)의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늘었다.

도 관계자는 “인구 증가 폭이 감소되고, 민간 주택수요가 부진하면서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크게 줄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올해까지 이어지며 건축허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가 개선되며 건축 경기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이인영 장관 제주청년과 대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1일 오전 제주시 아시아호텔에서 열린 제주지역 2030 통일대회에서 제주지역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장관은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제주가 한반도 평화 정착의 물꼬를 터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낙연 지지모임 ‘신복지 제주포럼’ 출범

4일 한라대 아트홀서 출범식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에서 지지모임을 출범시키고, 본격 세월에 나선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오는 4일 한라대 아트홀에서 신복지 제주포럼이 출범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8

일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 강원, 충남, 경남, 충북, 전남에서 지역별 신복지포럼을 발족하고, 지지자를 규합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17개 시도에서 포럼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반동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지난 23일 경기에서 출범한 신복지 경기포럼에는 2만여명이 넘는 발기인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포럼에 참여하는 지지자 규모와 면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전 대표 결에서 비서실장을 수행했던 오영환 국회의원(제주시)은 제주 신복지포럼의 구성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제주지역의 미래 발전 비전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 신복지 포럼 출범식은 당초 지난달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도내 방역 상황을 고려해 이날로 연기됐다. 서울=부미환기자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안내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추가 접수하오니, 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위원장

1 신고 기간 2021. 1. 1. ~ 2021. 6. 30. (6개월간)

2 신고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행정시, 읍·면·동 민원실, 제주도민회, 재외공관(미,일)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 현주소지 또는 4·3사건 당시 거주지의 행정시, 읍·면·동 민원실
 - 타시,도 거주 재외도민 : 당해 시,도 소재 제주도민회에 신고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3지원과 우편신고
 - 외국 거주 재외도민 : 재외공관(미,일) 및 재외제주도민회에 신고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로 우편 신고
- ※우편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우)63122

3 신고 대상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 희생자 : '47. 3. 1을 기점으로 '48. 4. 3 발생한 소요사태 및 '54. 9. 21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
- 유족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1명

4 신고자 희생자와 유족, 형제자매,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

5 신고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읍·면·동 민원실(타시도 재외제주도민회, 재일대한민국민단), 재외공관에 비치된 신고서를 교부 받아 신고 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신고미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신고서에 첨부할 증명서류

- ① 희생자 신고 : 희생자신고서, 유족명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사유 소명자료
- ② 유족 신고 : 유족신고서, 유족명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 ③ 후유장애자 신고 : 국립중앙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희생자신고서, 유족명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사유 소명자료
- ④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희생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과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하여 들은 사람 중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 제출
 -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친족 2인이 작성한 보증서 제출

※ 외국거주자로서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2인 이상이 작성한 보증서 제출

문의처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제주4·3사건처리과(044-205-6564, 6562,6563)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064-710-8434, 8435, 8436) 제주시 자치행정과(064-728-2275), 서귀포시 자치행정과(064-760-2254) 제주도내 읍면동 4·3업무담당